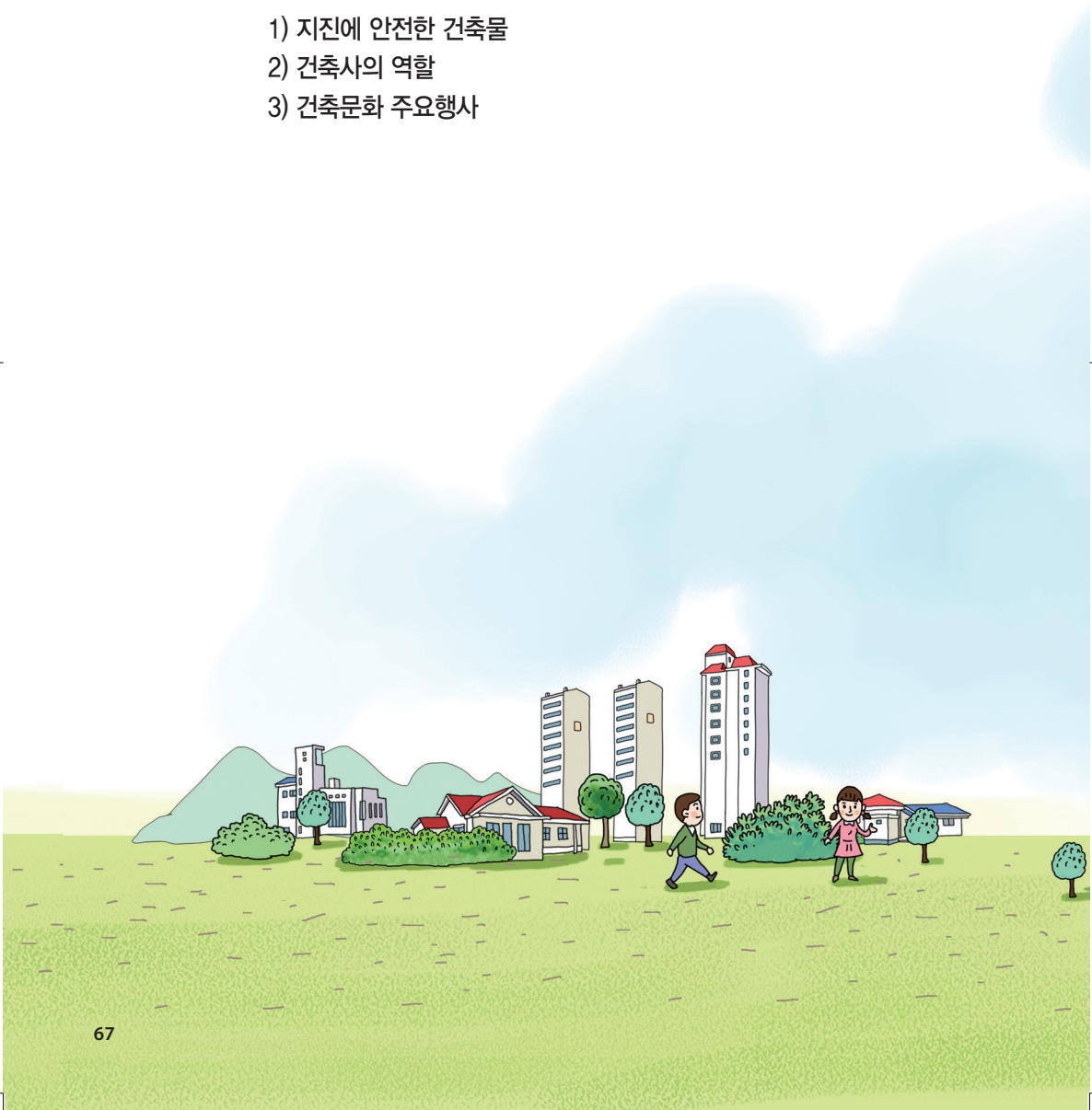


3 부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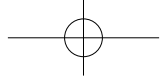
- 1)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
- 2) 건축사의 역할
- 3) 건축문화 주요행사





3. 목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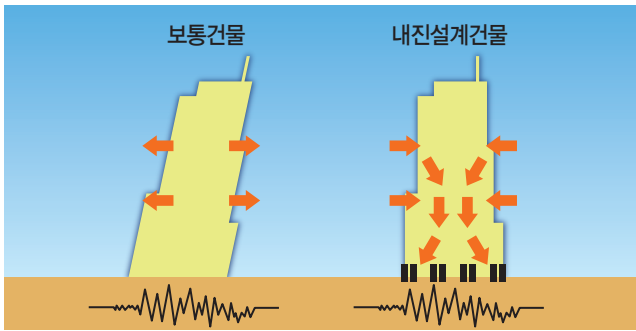


1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

1 내진설계

01 02 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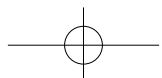
-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되려면 내진설계를 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.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이 건축물의 균열 또는 붕괴 사고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내진을 적용한 설계를 말합니다.
- 1988. 08. 25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
- 건축하기 시 허가권자에게 내진구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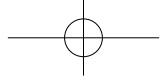


2 내진설계 확인 대상 건축물

01 02 03

-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
- 연면적이 500㎡ 이상인 건축물(연면적 200㎡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, 입법예고중). 다만 창고, 축사,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-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
-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
-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
-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
-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
-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,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
- 특수한 설계·시공방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





저기요~ 질문있어요!



개인소유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

- 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(갑지) 2페이지를 보면 "내진설계 적용여부" 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
- ② 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 표시가 없는 건축물은 허가신청일을 확인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.

3

허가일자로 확인해 보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

01 02 03

허가신청일	내진설계 적용 여부
1988. 03. 01 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진설계 미적용
1988. 08. 25 ~ 1996. 01. 0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층 이상의 건축물 • 연면적 10만㎡ 이상인 건축물 •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
1996. 01. 06 ~ 2005. 07. 1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층 이상 건축물 • 연면적 1만㎡ 이상 건축물 •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
2005. 07. 18 ~ 2015. 09. 2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층 이상 건축물 • 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 •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
2015. 09. 22 ~ 2017. 02. 0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층 이상 건축물 • 연면적 5백㎡ 이상 건축물 •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
2017. 02. 04 ~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층 이상 건축물 • 연면적 5백㎡ 이상 건축물 •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

잠깐!

내진설계로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을 내진보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세(취득세, 재산세)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